



뉴스홈 > 경제

Tweet 0 Like 0 크게 작게 프린트 이메일

E-2 소액 투자비자와 투자이민

이동찬 이민 변호사

입력일자: 2013-08-15 (목)

사람들이 E-2 소액투자 비자와 투자이민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.

E-2는 미국에 투자하고 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비자 또는 신분이다. 그러나 E-2 신분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은아니다.

현재 E-2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취업이민, 투자이민, 가족초청,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영주권은 신청할 수 있다.

투자이민은 지역에 따라\$50만 달러 또는 \$100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영주권을받는 것이다. E-2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다가도 투자금액을 늘려서 투자이민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다. 그러나 투자이민의 고용창출 조건 때문에 E-2 신분에서 투자이민을통해 영주권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.

또 한편으로는 E-2 비자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투자이민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. E-2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투자사업체의 국적이 중요하고투자 사업체의 국적은 사업체 소유자의 국적에 좌우된다. 법에 의하면 투자 사업체의 50% 이상을 미국과 조약을 맺은 나라의 외국인이 소유해야 E-2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.

예를 들어서 중국은 미국과 조약을 맺지 않고 있으므로 중국국적을 소유한 한민족은 E-2 비자 또는 신분을 받을 수 없다.

그러나 투자이민을 하는 경우 투자자의 국적은 문제가되지 않는다. 그래서 E-2 비자를 받지 못하는 중국인들이투자이민을 많이 신청하고 있다.

그러나 투자이민은 E-2 비자 보다 많은 투자금액을 요구한다. 전원지역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통해서 투자이민을 하는 경우 최소 투자금액은 50만 달러이다.

일반지역에는 50만달러 보다 훨씬 많은 100만 달러가요구된다.

E-2 비자의 경우 투자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. 사업체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적어도 2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것이 좋고 미국 내에서 E-2로신분변경을 한다면 적어도 1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것이 좋다. 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1만달러 미만의 투자로 고객이 E-2 신분을 획득한 케이스도 있다.

투자이민은 고용창출 부분에서 E-2 비자 보다 까다롭다.

투자이민은 정규투자이민과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으로 나누어져 있다.

정규투자이민을 하는 경우직접적으로 10명의 풀타임 고용직을 창출해야 하지만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을 하면간접적으로 10명의 풀타임 고용직을 창출할 수 있다. 사실상 50만달러나 100만달러를투자해서 직접적으로 10명의풀타임 고용직을 창출하는 것은 어렵다.

많이 본 기사

- 누드파티 성폭행 혐의 월가 30대
- 카지노행 노인 관광버스 전복
- 옷벗고 강물 투신 아시안 여성 구
- 여학생과 성관계 보조교사 체포
- 메디칼-메디케어 시행 연기
- “파티는 계속된다”
- ‘스마트워치’ 나와도 젊은이들 반
- 80대 할머니 “차세대 양성 힘써
- “치솟는 등록금 잡겠다”
- “비현실적 규정 없애야” 한국 정



라디오 서울 뉴스

- 라디오서울 주말연예
- 405 프리웨이 월서 B. 진입
- 산타애나 경찰, 음주운전 단속
- 오바마 케어 "지지하지만 큰 기대
- 주말, 60번 프리웨이 일부구간
- 한미 주총 "수익률 높여 내실 다
- TWC 무료 안테나 제공



그러나 간접적인 고용창출은 타당성 있는 방법론으로 고용창출을 증명하기에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은 정규투
자이민보다 덜 까다롭다고 말할 수 있다.

E-2 비자의 경우 투자이민과 달리 고용창출조건은 없다.

그러나 E-2 비자를 받으려면 한계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.

한계투자는 신청자의 생활유지를 위한 투자를 말한다.

E-2 비자를 신청할 때 처음부터 사업체의 직원을 고용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의 고용계획이 필요하고 E-2 비자
를 연장할 때에는 고용창출이 된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.

그리고 E-2 신분 연장은 2년 마다 한다. 연장할 때 사업체가 적자로 운영되면 연장신청이 거절될 수 있고 투자자
의 자녀는 21세가 되면 더 이상 E-2 신분을 함께 유지하지 못하므로 다른 체류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해야 한다.

반면 투자이민을 통해 정식 영주권을 받는다면 나중에 투자를 했던 사업체가 없어지거나 투자자가 투자자본을 회
수하더라도 영주권자의 신분에는 문제가 없다. 그리고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함께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
나중에 자녀가 21세가 되더라도 자녀의 신분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.

위에서 설명을 했듯이 E-2 소액투자비자와 투자이민은 확실히 다르다.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고 영주목적 가지고
있다면 E-2 소액투자 비자 보다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.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
하길 바란다.

(213)291-9980

- AD Law Firm Web Design 개발문의
- AD 웹사이트 제작 전문업체
- AD 읽을거리가 풍부한 WeeklyH를 온라인으로
- AD 과거 신문보기도 가능해요 E-Newspaper
- AD 더욱 똑똑해진 한국일보 전자신문으로 뉴스를 한눈에...
- AD E-paper 푸드 매거진으로 저녁 식단 결정하는 주부들이 늘어...

[홈으로](#) |
 [회사안내](#) |
 [게임월드](#) |
 [한인업소](#) |
 [구독신청](#) |
 [배달사고 접수](#) |
 [Place an AD](#) |
 [독자의견](#) |
 [안내광고신청](#) |
 [광고안내](#) |
 [라디오서울 생방송](#)



THE KOREA TIMES | [신문과 한국](#) | 서울경제
 소년한국일보 | [hankooki.com](#)

미주 한국일보의 모든 콘텐츠(기사)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, 무단 전재·복사·배포 등을 금합니다.
 COPYRIGHT © 1997-2011 [Koreatimes.com](#) ALL RIGHTS RESERVED. [CONTACT](#) FOR MORE INFORMATION